

2025년 하반기 익산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대출지원사업 공고

익산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5년도 하반기 익산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대출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0일

익산시장

1. 지원기간 : 2025. 8. 4. ~ 자금소진 시까지
2. 지원규모 : 특례보증 125억원, 이차보전 3% ~ 4%
3. 지원대상 : 익산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중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자
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충족하고,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소기업 · 소상공인

- 나. 익산시에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대표자 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인 자
 - 1) 튼튼 소상공인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840점 이상인 소기업 · 소상공인
 - 2) 탄탄 소상공인 : 대표자 개인 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소기업 · 소상공인

4. 지원내용

- 가.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특례보증
- 나. 보증기간 : 5년
 - 1)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1개월)
 - 2)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1개월)
- 다. 대출이자 : 금융기관별 약정금리 (금리변동가능)
- 라. 이차보전 : 대출일로부터 연 1%를 초과하는 대출금리에 대하여 이자지원

1) 튼튼 소상공인 : 최대 3.0% 이내(최대 3년간)

2) 탄탄 소상공인 : 최대 4.0% 이내(최대 3년간)

마. 보증비율 : 90%

5. 지원제외 대상

- 가.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별지 2호)
- 나.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8조 및 제35조의 5에 따른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 라. 사채활용 및 부동산 취득 등 융자금 목적이 부적절한 경우
- 마. 기타 전북신용보증재단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

6. 취급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

가. 자금대출 금융기관 :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나. 보증기관 : 전북신용보증재단(보증수수료 연0.9% - 대출자가 납부)

7. 지원절차

가. 자금 지원 신청 : 전북신용보증재단(익산시 무왕로 103, 농협중앙회 익산지점 건물 2층)



나. 구비 서류

- 1) 소상공인자금신청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 (별지 1호)
- 2) 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동의서 등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기타 서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보증재단에 제출

다. 상담문의 : 전북신용보증재단 익산지점(☎063-838-9377)

○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전면 보증상담예약제를 시행합니다.

이점 숙지하시어 이용에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 예약방법 : 스마트폰에서 “보증드림” 어플 설치 → 접속 후 “전북신용보증재단” 선택 → 스크롤바 내려 “상담예약하러가기” 클릭 → 본인인증 및 자가진단 → 예약자 정보 및 예약일자 선택 → 예약완료

※ 상담 예약은 자금지원 예약이 아니며, 예약에도 불구하고 한도소진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원활한 보증업무 추진을 위해 “보증드림” 회원가입을 미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 이차보전금의 지원중지 및 환수

- 가. 사업장 휴·폐업 또는 익산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나.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 다.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받는 경우
- 라.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는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 마.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 바. 특례보증 대출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사.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기타사항

- 가. 하반기 자금지원 규모인 125억원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2025년 총 250억원 자금지원(상반기 125억원 소진, 하반기 125억 추가 공급)
- 나. 기존 익산시 특례보증 자금 수혜자는 중복 수혜 불가로 본 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소상공인과(☎063-859-5775)로 문의

<별지 1> 익산시 소상공인 자금지원(희망더드림) 신청서

익산시 소상공인 자금지원(희망더드림) 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	.	.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 종목	연락처		집전화 :		
	사업장주소	상시고용인원		명		
자금신청금액	₩ 원 (금)	원)				
업체규모	점포 : m ²					
융자금 사용목적	<input type="checkbox"/> 업종전환 및 점포이전 <input type="checkbox"/> 운전자금 확보 <input type="checkbox"/> 인테리어 <input type="checkbox"/> 기타()					
	융자예정 금융기관	신용보증 재단확인	<input type="checkbox"/> 신용점수 (점)	확인자		
<input type="checkbox"/> 신용정보관리 대상자 해당여부 (여 / 부)			성명 (인)			

- 본인은 위와 같이 익산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또한 본인은 이차보전금 지원 도중에 이차보전금의 지원중지 및 환수 사유발생 시에는 이차보전금의 지원중지 및 환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익산시장 귀하

담당자	계장	과장
접수일자		접수번호
문서번호		2025 -

※ 신청서 제출과 자금지원 결정은 별개사안이며 익산시의 추천서 발급검증과 대출실행 및 신용보증서 발급은 은행여신규정 및 신용보증 심사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이용기관 명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이용사무(이용목적)	(표준) 소상공인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1형)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 이용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기간·주기 명시)	5년(3개월 주기 조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명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해주세요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대상자(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장 귀하

<별지 2>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6조 관련)

표준산업분류	업 종
46102중	담배, 주류 중개업
46209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56211	일반유통 주점업
56212	무도유통 주점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 중 펍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기타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 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 회장이 지정한 업종.